

2026

# 부산교통공사

## 고득점 지방공기업법

엠북 교통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별표 종합정리
- ★ 최근 개정 및 26년 시행 내용 반영
- ★ 1시간 2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도서명 : 고득점 지방공기업법

ISBN : 979-11-7393-158-1

발간일 : 2026-01-15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mailto:by4782@gmail.com)

정가 : 8,500원



#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지방공사의 설립(p13)

제3장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p28)

제4장 지방공사의 재무회계(p56)

제5장 감독 등(p88)

제6장 보칙(p96)

제7장 벌칙(p123~130)

## [약어/용어]

법은 지방공기업법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직영기업은 지방직영기업

공사는 지방공사

공단은 지방공단

사장은 지방공사 사장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군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정책위는 지방공기업정책위

면적단위는 제곱미터(평방미터)

##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신설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1장 총칙

1~4조

# 1. 목적

## 가) 법은

-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 합리화함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나) 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 2. 적용 범위

가. 법 적용 사업: 수취자유/ 하주토주/ 공신내

- 다음 사업(부대 사업 포함) 중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직영기업)과 공사, 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각각 적용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2)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

3)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 4) 유료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km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 5)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 6)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이나 주택건설 면적 10만

#### 7)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

8) 주택/토지, 공용/공공용건축물 관리 등 수탁

- 주택은 다음 공공복리시설 포함

- 주택 기능발휘와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 공원, 녹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 생활복리  
시설

9)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10)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발전/이용/보급  
사업

# 1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지자체(장)

1) 기준에 새로 도달한 사업은 도달 6월내  
법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 다음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직영기업, 공사, 공단이 경영시 조례에 따라 법  
적용 가능

-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 법 적용 사업 중 기준에 미달
- 체육시설업
- 관광사업(단, 여행업/카지노업 제외)

3) 기준에 미달하는 **수도, 공업용수도, 하수도** 사업은 직영기업 요금 규정 준용 가능

- 준용하는 지자체 공보에 대상사업 명칭  
고시

[참고] 직영기업 요금

- 지자체는 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징수
- 적정, 지역 간 형평, 급부 원가 보상, 기업의 계속성 유지하게 결정

-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납부시 요금의 3/100내 조례에 따라 연체금 가산 징수
- 요금/연체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의 예 따름

### 3. 경영의 기본원칙

-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
-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설치, 설립, 경영시 민간경제 위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저해, 환경 훼손않도록 노력

## 4.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규정

- 제정/시행시 기본원칙 따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2장 지방공사의 설립

49~57조

1. **설립**: 지자체는,

-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시 설립 가능

· 설립 전 시도지사는 장관과, 시군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의 협의

- 설립, 업무, 운영 기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2. 타당성 검토

가. 설립시 지자체는 미리 타당성 검토하고  
결과 공개

- 세부절차/검토기준은 장관이 정함

### 나. 내용

1) 사업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별 수지분석

2) 조직/인력 수요판단

3)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다. 전문기관

1) 장관 지정/고시 기관에 검토 의뢰

2) 지정요건은

a) 전문 인력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 3년 이상 5명 이상과  
5년 이상 2명 이상

b) 조사/연구 능력

- 최근 3년내 지방공기업, 공기업,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

## 라. 심의위

1) 지자체장이 의회의원, 관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2)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주민공청회